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5. . . (제 회)	

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·운영에
관한 규정 제정안

제출자	
제출 연월일	2025. . .

법제처 심사 전

사회대개혁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규정

제1조(목적) 이 영은 사회대개혁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제 정당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사회대개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사회대개혁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국무총리의 자문에 응하거나 주요 정책을 제안한다.

1. 민주주의 및 사회 정의 실현에 관한 사항
2. 남북간 평화 협력 구축 및 실용외교에 관한 사항
3. 교육 및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
4. 경제 정의와 민생 안정에 관한 사항
5. 기후와 생태, 식량 및 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사회대개혁을 위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4조(구성 및 임기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성별을 달리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.

1. 시민사회단체·학계 등에 소속되어 시민사회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

험이 풍부한 사람

2. 정당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

3. 사회 각 분야 사회개혁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4.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시민사회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
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)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국무총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.

②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.

제6조(위원의 해촉) 국무총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
2. 직무 태만, 품위 손상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3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7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8조(회의 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회의를 주재한

다.

② 위원회의 회의(서면 또는 대면)는 격월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9조(운영위원회) ① 전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 위원회 실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되며, 위원은 각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회의 추천으로 구성한다.

제10조(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)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 또는 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·단체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제11조(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)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·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·단체의 장 또는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위원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처로 하여금 이행계획을 수립하고, 그에 따라 이행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.

제12조(조사·연구의 의뢰)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·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.

제13조(수당 등) 위원회의 위원, 관계 공무원, 관계 전문가 또는 그 밖의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(운영세칙)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존속기한) 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.